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한세엠케이 주식회사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 2011. 2. 28.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0 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 7 조에 의한 내부거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구성)

-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2 인과 사내이사 1 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수를 위원총수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새로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충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자,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위원회권한)

- ①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대규모 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이거나 10 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에 대해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한다.

제 5 조(위원회회의등)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전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6 조(결의방법)

위원회는 제 4 조에서 규정한 거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한 후, 이사회에 통보하여 결의토록 한다.

부 칙(2011.02.28)

이 규정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